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참고인 조사시 인터넷 화상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12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관	2
3.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5.
3. 회 부 일 : 2024. 10.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개통되어 참고인이 어디서든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수사기관이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참고인이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진술도 가능함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해당 내용을 쉽게 알게 하고 참고인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을 듣고자 할 때, 출석 진술 외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1항).

[표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u>출석</u> 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 ----- ----- <u>출석(인</u> <u>터넷 화상장치 이용을 포함한다)</u>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관

법무부는 노후화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¹⁾을 전자문서 기반의 사건처리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고, 2024년 9월부터 개통·운영하고 있음.

1)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법무부, 법원,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에서 수사, 기소, 재판, 집행 및 사건 종결에 이르는 형사사법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생성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2005~2009년 최초 구축, 2010년 서비스 개통)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①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절차 실현을 위한 ‘형사사법 업무 혁신’, ② 국민중심의 형사사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 ③ 디지털시대·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미래지향 IT구조 개편’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 중 ② ‘대국민 서비스 혁신’의 세부 과제를 보면,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간단한 조사는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고 있음.²⁾

[표 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대국민 서비스 혁신’ 개요



자료: 법무부

2) 한편,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는 수사처 신설 이후 2022년 별도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법무부가 운영하는 KICS와 연계 작업을 완료하였고, 향후 ‘차세대 KICS’의 구축 등을 추진 중에 있음.

[표 3] ‘대국민 서비스 혁신’ 세부과제

국민중심의 형사사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	
피해자 지원 토털 서비스	필요한 지원제도 안내, 사건 진행사항, 제도 지원결과 통지 등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일괄 지원이 가능한 피해자 전용 포털 구축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형사사법 민원 서비스 재편	사건조회 절차 간소화, 사건정보·통지·벌과금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 등 사용자 중심의 형사사법포털 개편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원격화상조사 서비스	간단한 진술을 위해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간 및 사용기기의 제약 없이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조사 가능한 원격화상 조사시스템 구축
지능형 형사사법 도우미 (챗봇) 서비스	사건진행현황, 벌과금, 통지서 안내 등 민원인이 많이 문의하는 정보에 대해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도우미(챗봇) 서비스 구축

자료: 법무부

한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에 맞추어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³⁾은 수사기관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이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참고인이 전자서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서명) ③ 법원 외의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결정문, 조서,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진술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검토의견

개정안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라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가 가능해진 법·제도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상 참고인 조사에 관한 규정에 ‘화상장치를 이용한 진술’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간단한 조사 때문에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참고인의 불편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됨.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현행법상 참고인 진술 조서의 효력(제312조제4항4), 참고인 조사 시 영상녹화(제221조제1항 단서5),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제221조제3항 및 제163조의26) 등 규정은 참고인의 실

4)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5)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6)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 출석을 전제하고 있는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조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참고인 진술 조서의 법적 효과나 참고인의 권리 보호 등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위 규정들을 “인터넷 화상장치 이용을 포함한다” 등 문구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개정안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5호) 부칙 제1조7)는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 이용의 적용시기를 2025년 6월 9일부터로 규정하고 있음.⁸⁾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참고인 진술 시 수사기관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참고인이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2025년 6월 9일부터일 것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일도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7)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5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각각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8)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적용한다.

1. 「형사소송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946호) 부칙

제2조(개별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적용시기) 법률 제18485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 2025년 6월 9일

2. 법 제3조제8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 2025년 10월 10일

문 의 처
02)6788-5048